

◎ 선교사 위기관리를 위한 세계선교기금 운용 시행세칙 ◎

제1조(목적) 선교사 위기관리 기금은 교리와 장정 제12편 각종 정관, 규정 및 규칙 “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”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, 선교사 위기관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교회부담금과 후원금, 특별모금(헌금)과 수익을 위한 예치로 구분하여 조성한다.

- ① 교회부담금은 2022년~2023년 동안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.3%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,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.
- ② 후원금은 선교행정부 업무 중 선교사후원과 복지를 위해 수시로 개인이나 교회(단체) 후원자를 발굴하여 기금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특별모금(헌금) -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 발생시 모금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수익을 위한 예치 - 교회부담금 전체 금액의 90%를 국내 금융기관의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장기 예치하고, 10%는 기금으로 운용한다. 장기 예치는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제3조(기금신청의 절차) 선교사 위기관리기금의 신청서는 나라 대표 및 권역 대표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고, 감리회세계선교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.

제4조(기금의 지급)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, 기금의 지급은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.

- ①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 -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 위원회로 모여 지급을 결정한다. 단, 긴급한 위기 상황이 접수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 즉시 소집하여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.
- ② 선교사의 구분에 따른 지급 - 선교사는 교리와 장정 제12편 각종 정관, 규정 및 규칙 “세계선교사 관리규정”의 선교사 구분과 자격에 따르며, 선교사 위기관리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.
- ③ 선교사 배우자 및 자녀(30세 미만 미혼자에 한함)에 대한 지급 - 선교사의 배우자 및 자

녀의 위기 상황이 접수 되었을 때에는, 선교사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액의 70%를 지급하고, 상한선을 3,500,000원으로 한다.

- ④ 상임위원회 결의에 의한 지급 - 2,000,000원 이하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회(위원장, 선교국총무, 위원 3명)의 결의로 지급하고,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⑤ 동일 질병(사고)에 대한 지급 - 동일 질병(사고)으로 위기관리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1년(12개월) 동안에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다.
- ⑥ 특별 지급 - 위의 지급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(순직 등)는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가 특별 지급을 결의할 수 있다.
- ⑦ 위기관리기금의 지급 절차 - 나라 대표 및 권역 대표에 의해 신청된 선교사위기관리기금 신청서는 감리회세계선교사회의 심의(7일 이내) 후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선교사위기관리기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 지출결의서에는 선교사위기관리위원장의 결재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⑧ 선교사위기관리기금 지급 규정(표)

분 류	대 상 / 피 해 금	금 액	비 고
별 세		2,000,000원	유족에게 전달
재난 및 사고 (1회 지급)	피해금 10,000,000원 이상	5,000,000원	상한선 5,000,000원 적용
	1,000,000원 이상 10,000,000원 미만	피해금액 50%	상한선 5,000,000원 적용
질병 사고(병원 치료)	암 진단시	1,000,000원	각종 암 최초진단
	본인부담금 10,000,000원 이상	5,000,000원	상한선 5,000,000원 적용
	1,000,000원 이상 10,000,000원 미만	본인부담금 70%	상한선 3,500,000원 적용
	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	본인부담금 30%	상한선 5,000,000원 적용
	현지 치료	본인부담금 30%	상한선 5,000,000원 적용
비자발적 철수에 따른 손실 (1회 지급)		손실금의 50%	상한선 5,000,000원 적용
지급율	교역자, 평신도, 원로, 전문인, 국내이주민	100%	전체 적용
	협력, 명예, 단기	70%	

제5조(지급의 범위) 본 기금의 지급은 선교사의 위기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해야 하고, 위기관리(상황)는 선교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, 전쟁, 정치사회적 격변, 선교사 및 가족 납치, 순교, 사망, 사고 등으로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2개월 이상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- ① 신체적 피해는 선교사의 위기 상황으로 위의 제4조 기금의 지급 원칙에 따르되, 상한선은 5,000,000원으로 한다.
- ② 정신적 피해는 선교지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 및 후유증을 말하며, 이에 대해 전문 상담센터와 병원을 통한 치료를 병행하고, 치료비 상한선은 3,000,000원으로 한다.
- ③ 물적 피해는 세계선교사관리규정에 따른 시행세칙 제7조 선교지 재산 관리 원칙을 따르는 경우 상한선 5,000,000원으로 하며, 이 외의 경우는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의한다.
- ④ 비자발적 철수로 인한 손실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, 피해금의 50%로 하고 상한선은 5,000,000원으로 한다.

제6조(보고) 세계선교기금의 지급 내역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,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지한다.

제7조(감사) 1년에 2회 본부 감사를 받는다.

부 칙

본 세칙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된 날부터 발효된다.

2023년 3월 14일 제정

2023년 7월 31일 개정